

# I. 2010년산 산림사업용 종·묘 규격 및 가격고시

● 산림청고시 제2010-109호 : 관보 제17415호(2010. 12 . 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산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산 립 청 장

○ 성 묘(成苗)

(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10년산 가격	비 고
고로쇠나무	1-0	240,000	
	1-1	584,000	
굴참나무	1-0	355,000	
	1-1	442,000	
느티나무	1-0	338,000	
	1-1	689,000	
	1-1-1	1,521,000	
리기다소나무	1-0	180,000	
	1-1	246,000	
리기테다소나무	1-0	180,000	
	1-1	250,000	
물푸레나무	1-0	236,000	
	1-1	531,000	
밤나무	고접	2,808,000	
	저접	1,922,000	
백합나무	1-0	474,000	
	1-1	963,000	
백합나무(도입)	1-0	483,000	
	1-1	969,000	
삼나무	1-1	407,000	
상수리나무	1-0	373,000	
	1-1	708,000	
소나무	1-1	268,000	
	1-1-1	1,806,000	
	1-1-2	3,046,000	분뜨기 묘목
스트로브잣나무	1-1	289,000	
	1-2	422,000	
	1-2-3	3,400,000	분뜨기 묘목
	2-1	390,000	
	2-2-3	4,025,000	분뜨기 묘목
아까시나무	1-0	253,000	
오리나무	1-0	312,000	

≡참 고 ≡

수 증 별	요 령	2010년산 가격	비 고
자작나무	1-0	331,000	
	1-1	649,000	
	1-1-1	1,524,000	
잣나무	2-1	345,000	
	2-2	408,000	
	2-3	668,000	
	2-2-1	1,862,000	
전나무	2-2-3	3,722,000	분뜨기 묘목
	2-3	616,000	
	1-1	403,000	
편백	1-1-1	719,000	
	1-1-2	3,094,000	분뜨기 묘목
	1-2-2	3,271,000	분뜨기 묘목
	1-1	246,000	
해송	1-1-2	2,910,000	분뜨기 묘목
	1-1	392,000	
화백	1-1	392,000	

- 용 기 묘

(원/천본)

수 증 별	요 령	2010년산 가격	비 고
낙엽송 용기묘	2-0	604,000	
상수리나무 용기묘	1-0	429,300	
소나무 용기묘	1-0	232,300	
소나무 용기묘	2-0	519,000	
소나무 용기묘	2-2	2,552,300	“용기 대표”
편백 용기묘	2-0	531,300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을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 해당액의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 (단, 분뜨기 묘목은 상차 인도가격임)

○ 유 묘(幼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묘 령	2010년산 가격	비 고
고로쇠나무	1-0	217,800	
낙엽송	1-0	54,300	
느티나무	1-0	279,400	
리기다소나무	1-0	42,600	
리기테다소나무	1-0	45,600	
물푸레나무	1-0	212,800	
박달나무	1-0	256,200	
밤나무	대목	506,700	
삼나무	1-0	65,200	
상수리나무	1-0	317,400	
소나무	1-0	45,300	
스트로브잣나무	1-0	62,200	
스트로브잣나무	2-0	95,000	
자작나무	1-0	324,200	
잣나무	1-0	65,300	
잣나무	2-0	119,000	
진나무	2-0	63,300	
편백	1-0	63,200	
해송	1-0	44,000	
화백	1-0	55,400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 (굴취, 선묘, 결속, 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참 고≡

○ 종 자(種子)

(단위 : 원/kg)

수 종	종자품질 기준		2010년산 가격
	순량률	발아율	
고로쇠나무	89 %	26 %	76,700
낙엽송	90	40	232,900
느릅나무	84	36	76,800
느티나무	95	61	78,300
리기다소나무	91	85	99,700
리기테다소나무	94	85	178,500
물푸레나무	93	47	24,200
박달나무	76	21	56,000
밤나무	96	61	2,100
밤나무 접수(천본)	-	-	35,100
백합나무	86	9	37,400
삼나무	89	32	127,600
상수리나무	89	57	2,900
소나무	93	87	165,300
스트로브잣나무	92	80	231,900
아까시나무	90	64	65,600
오리나무	60	29	148,900
자작나무	78	14	108,900
잣나무	98	64	6,000
전나무	93	25	25,000
참죽나무	70	53	93,600
편백	91	12	166,200
해송	96	92	112,800
헛개나무	95	32	133,300
호두나무	97	66	13,300
화백	74	31	166,200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가격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